【 2019.5.28(금) 건설경제 】

하반기부터 公共시장 적정공사비 길 열린다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가격평가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고난이도 공사에도 단가심사가 도입된다. 적격심사낙찰제도 종심제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등은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계약예규 개정… 8월부터 시행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

고난이도 공사 단가심사제 도입

70%대 그친 낙찰률 상승 기대

간접비 발주처 지급 규정 마련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종심제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는 균형가격 산정방식이 개선됐다. 현행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나머지를 평균해 산정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상·하위 20%씩만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균형가격이 소폭 올라갈 전망이다.

고난이도 공사에도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낙찰률 상승이 기대된다. 그동안 일반 종심제와 달리 고난이도 공사에는 단가심사가 없어 낙찰률이 70% 초반에서 형성됐다.

또한, 적격심사에서는 가격평가 시 사회보험료 등이 제외된다. 근로자 보호, 안전 제고 등을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 역시 직접공사비 삭감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제외 대상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토·일요일자 신문 쉽니다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했고,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명시했다. 그동안은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을 뿐, 비용 지급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불가항력에는 태풍·홍수 등의 천재지변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도 포함된다.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도 개선된다. 자재단가는 자재의 수량 등 구매 규모를 고려해 계상토록 했고,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강화(예가 60% 미만 시 감점 → 64% 미만 시 감점)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불가 등이 반영됐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돼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뒤 "개정된 예규는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하되 발주기관의 기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낙찰률이 소폭 올라 적정공사비 확보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회훈기자 hoony@

건설수주 살아나니… 일자리도 '훈풍'

지난달 全산업 채용 32% '↑'
절반이 '건설업' 취업 인원
탄탄한 고용 버팀목 입증

지난달 기업이 늘린 채용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건설수주가 늘어나면서 건설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건설업 채용 인원은 26만90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2만7000명(11.2%) 늘어났다.

지난달 전체 채용 인원 83만6000명 가운데 32% 정도가 건설업에 취업한 것이다. 특히 4월 건설업 채용 증가 규모는 전체 채용 증가 규모(5만4000명)의 절반에 해당한다.

사실상 지난달 채용시장을 건설이 이끈 셈이다.

건설업 종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종사자는 133만6000명으로 지난해 4월 종사자 수 130만7000명보다 2.2%(2만9000명) 증가했다.

건설업 종사자 수 증가는 지난해 11월 0.7% 증가한 이후 6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특히 올해 들어 건설업 종사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건설업 종사자 수는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2.3% 늘었고, 지난달에는 0.9% 증가했다.

건설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건설수주액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지난 3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5조9783억원이다. 지난해 3월보다 35.9% 증가했다. 1분기 전체 수주액도 지난해 1분기보다 0.7% 정도 늘어난 34조326억원이다.

올해 전문건설업 수주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으로 추정한 지난달 전문건설공사 수주액은 7조8750억원이다. 지난해 4월 수주액보다 18% 정도 늘어난 규모다. 1분기 전문건설업 수주액도 지난해 1분기보다 1.4% 정도 늘어난 19조6300억원으로 파악된다.

건설수주액이 늘어나면서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전문직별 공사업의 종사자 수는 9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명이나 늘어났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투자 증가가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확실하다"면서 "국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건설업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아하! 그렇구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 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

A가 발주한 신축공사를 B가 수급하고, C가 그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그중 조적공사 부분을 D에 재하도급하였는데, 그 공사는 중도에 중단되었다. C는 공사 중단 이전에 D에게 공사 기성금으로 액면금 6,765,000원의 어음을 교부하였다. D는 C에게 그때까지의 기성금 3500만원(부가가치세 350만원 별도)을 청구하면서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C는 D에게 현금 350만원(그 부가가치세이다.) 및 액면 500만원, 만기 같은 해 11. 26.로 된 어음을 교부하였고, 그 외에 D에게 공사기성금의 일부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 4. 6. C가 D에게 하도급 공사잔대금 2800만원세금계산서상의 35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500만원-200만원)을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한 200만원은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C가 D에게 교부한 어음들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그 만기가 60일을 초과하는데도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사가 중단된 후 C와 D는 1998. 9. 21. C가 D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1650만원으로 정산하고, 같은 해 10. 15. 그중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법원은 C와 D는 1998. 9. 21. 현재 C가 D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1650만원으로 정산·확정지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당시인 1999. 4. 6. C가 D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 잔대금은 1450만원(정산금 1650만원-1998. 10. 15.자 변제금 200만원)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C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중 1,4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